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타공사·타행위로 인한 도로공사 시 원인자 부담 규정 삭제〉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289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과 현 준

목 차

□ 정부제출(제2202289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타공사·타행위로 인한 도로공사 시 원인자 부담 규정 삭제	2
2. 부칙	9
※ 참고자료	11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289호)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7. 26.
3. 회 부 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타공사·타행위로 인한 도로공사 시 원인자 부담 규정 삭제(안 제91조 등)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91조는 타공사(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타행위(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은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은 이러한 원인자의 비용 부담이 규정된 제9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② (생략)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부대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삭제>

현행	개정안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현행	개정안
3. <u>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u> 4. <u>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u> ⑥ <u>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u>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 제90조, 제92조 및 제93조----- ----- ----- -----. ----- -----.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 ~ 3. (생략)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임.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자원조성금(「수산자원관리법」)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폐지·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별법 개정과 연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1)에서 해당 부담금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73호)도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²⁾

국토교통부는 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과실적이 미흡하고, 제35조제1항³⁾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낮으며, 또한 타공사 시행자 및 타행위자 대부분 도로를 직접 원상복구하고 있어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토교통부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의 부담 조항이 있어 제91조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때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현행법은 도로 관련 사업 시행(제4장)과 도로에 관한 비용(제8장)을 별도의 장에 규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은 제4장의 제25조부터 제38조에서 규율하면서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28.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 정비대상 부담금 및 법률은 참고자료 참조

3) 「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도로에 관한 일반적 비용부담 원칙을 제8장의 제85조에서 규율하고,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에,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에 대한 비용부담을 제89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에,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에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원인자 부담 규정이 있어 제91조의 실효성이 낮다고 할 경우 제91조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제91조제1항에 제35조제1항의 원인자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며, 제35조제1항에서 비용부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91조제3항에 규정된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도로공사 등을 하는 경우의 비용부담 조항은 삭제할 경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제37조)는 있으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제도에 대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음. 현행법 제37조에 따를 때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도로에 관한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비용부담 조항이 삭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율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삭제 내용에 포함된 제91조제5항 및 제6항은 교통사고

로 인한 도로공사 시 도로관리청이 비용부담자 파악을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 조항이 삭제가 필요한 만큼 실효성이 낮은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동 조항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2017년 6월)을 발표하고, 관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⁴⁾이 발의 및 심사되어 2018. 3. 13. 신설된 사항임. 그런데 도로시설 파손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최근 3개년 평균 1,460여건에 달하고 있어 비용부담자 파악을 위한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연도별 도로시설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집행 실적(2021~2023)】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고속국도	건수	1,462	1,359	1,283	1,368
	금액	43.8	48.7	44.2	45.6
일반국도	건수	7	15	7	9.7
	금액	0.5	0.8	0.5	0.6
지방도	건수	78	91	88	85.7
	금액	1.6	2.6	2.3	2.2
소계	건수	1,547	1,465	1,378	1,463.4
	금액	45.9	52.1	47.0	48.4

※ 자료 : 국토교통부

4)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8913호

2.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부대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종전의 제9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자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경우: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2.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자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가 제정·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제3조(원인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1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에 대한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91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2조제2항 중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한 부담금(종전의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에 대한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 제91조 원인자 비용 부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비용 부담에 대한 경과조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2조의 경우 법률 시행일까지 국토교통부령이 개정·시행되지 않을 경우를 예정하고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되 국토교통부령이 개정·시행되기까지 종전의 준용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행규칙 개정·시행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 법률을 달리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규칙 간 관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례로 생각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행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만,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의 자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경과조치 또는, 별도 기한을 두지 않은 경과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

정비대상 부담금 및 법률 목록

부처	부담금	주요 개정사항
	계	※ 18개 부담금 폐지, 21개 법률 개정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삭제
외교부	출국납부금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지방자치법 제155조 삭제
문체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삭제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관광진흥법 제64조 개정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관광진흥법 제64조 개정
산업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광업법 제87조 삭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삭제 및 제16조의2 신설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삭제 • 지하수법 제30조의3 개정
	수익자부담금 (댐건설관리법)	• 댐건설관리법 제23조 삭제
국토부	원인자부담금	• 도로법 제91조 삭제
	시설부담금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제2, 3항 삭제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의2 제2, 3항 삭제
	시설부담금 (물류단지)	• 물류시설법 제44조 제2, 3항 삭제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삭제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법 제40조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해운법 제22조의2 삭제
복지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개정(복지부)
기재부		•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개정
	폐지 부담금 전반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7.23.)